

공무원 연금제도의 기초적 이해

정 윤 한

행정자치부 서기관

1. 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제도를 두는 취지는 i) 공무원과 공무원제도의 독립성을 유지, ii) 공직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를 제고하여 우수인재를 유치, iii) 연장된 보수로서 현재 보수를 미래로 이전, iv) 노령공무원을 정치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방향으로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지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복으로서의 특수한 신분을 지니고 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비상근무, 봄철에 날씨가 좋아도 불날까봐 대기, 어느 정도 자신의 재산을 공개해야 하며, 퇴직 후에도 직무와 관련 있는 직장에 마음대로 취직할 수도 없는 등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충실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한 소득과 노후의 삶도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것이다.

만일 공무원에게 일정한 급여와 미래에 대한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여 two jobs족이 되는 등 아마도 자기중심적인 업무행태를 보일 것이다.

좋은 직장은 자기가 속한 조직의 직원이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직장일 것이다. 그러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민간 기업에는 충분한 급여와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해놓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복무와 보수, 신분보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공무원 상 재해와 퇴직수당, 그리고 연금에 대해 규정해놓고 있다. 엄격한 복무규율과 어느 정도 안심하게 노후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이다.

2. 공무원의 복지프로그램

공무원의 복지프로그램은 다른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공무원연금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한정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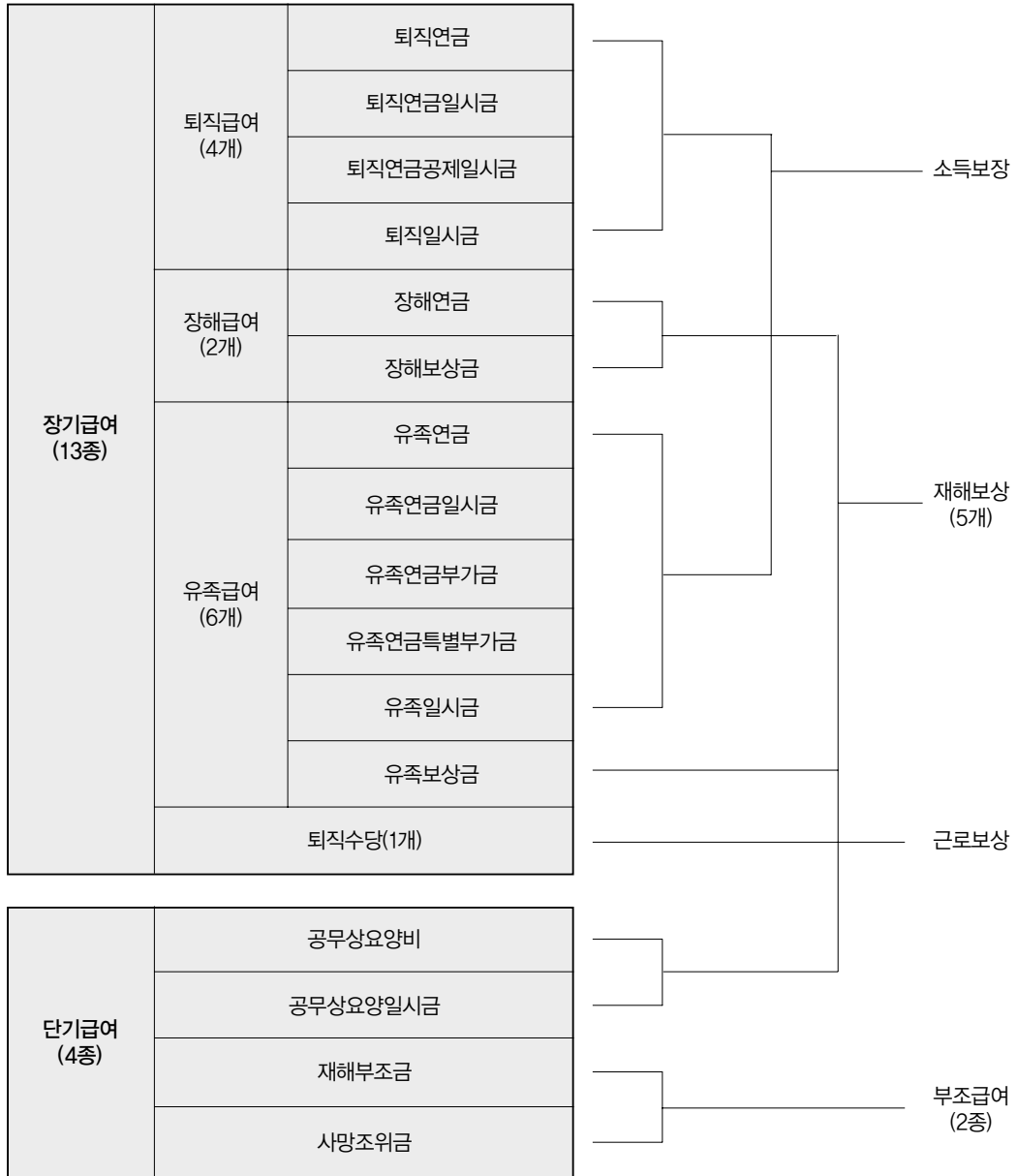
1) 급여종류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총 17가지 종류로서 크게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단기급여는 공무원질병·부상과 재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장기급여는 퇴직·폐질 및 사망을 대상으로 한다.

단기급여는 주로 재직 중에 발생하는 급여사유에 대해 단기적인 소득지원이나 보상 등을 실시하는 것이고, 장기급여는 장기간에 걸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13종의 장기급여와 4종의 단기급여 등 총 17종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종류〉



한편 법적인 분류와는 달리 급여의 내용에 따라 소득보장, 재해보상, 근로보상, 부조급여 등의 4가지 형태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제도가 일종의 공무원에 대한 종합복지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 비용부담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방식에는 기여제와 비기여제가 있다. 기여제(contributory system)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인 국가나 지자체와 연금수급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는 사용자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모든 연금제도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 역시 기여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매월 보수월액의 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며 기여금과 부담금 수입으로 연금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근로보상의 성격을 갖는 퇴직수당,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 및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한다.

공무원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은 점차 좋아져야 바람직하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연금정책의 딜레마가 있는 것 이다.

3. 예상 퇴직급여 계산법(사례)

이번 호에서는 사례를 들어 연금의 내역을 알아보고자 한다.

공무원들에게 있어 지금 당장 퇴직하면 나의 퇴직급여가 얼마나 되고, 정년까지 근무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은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기여금을 봉급에서 원천징수하고 급여는 공단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인 것 같다. 연금도 월급과 동일하다. 다만 퇴직 후에 받게 되는 점만 다르다. 그 내역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객지원시스템 초기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재직자정보’ 코너의 「예상퇴직금」조회를 통해 자신의 퇴직급여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내가 퇴직하면 받게 될 퇴직급여는 ‘보수월액’과 ‘재직기간’에 크게 좌우된다. 직급호봉이 높을수록 보수월액도 높아 그만큼 퇴직급여가 커지며, 재직기간이 길수록 지급배수와 지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근속자일수록 퇴직급여 산정에 유리하다. 특히 재직기간이 20년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으로 급여종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급여 수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는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경우와 20년 이상인 경우의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예상퇴직금」조회 화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조회일 현재 시점의 예상퇴직금 내역이 제공된다. 조회 시점까지의 재직기간과 보수월액이 안내되고, 급여산정내역과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재직기간이 어떻게 산정되었고, 퇴직급여액은 어떤 산식을 통해 산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실무책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조회화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수치 외에 그 산정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case 1】 1993년 10월 9급 3호봉 임용, 2007년 12월 현재 7급 15호봉

■ 인적사항

성명	김×	주민등록번호	67××××- ×××××××	임용일	1993.××.××	기관명	××시청
----	----	--------	-----------------	-----	------------	-----	------

우선 본인의 인적사항 및 임용일, 현재의 소속기관이 제시된다. 임용일은 재직기간 산출에 있어서 중요하고, 기관명은 전출입에 따른 신분변동사항 관리에 필요하므로 혹시라도 오류가 있으면 발견 즉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부에 연락하여 정정토록 해야 한다.

■ 재직기간

기본기간	특례기간	감축기간	퇴직급여 재직기간	퇴직수당 재직기간
14년 3월	2년 3월	0년 0월	16년 6월	14년 3월

공무원 연금제도 이해

재직기간은 퇴직급여 재직기간과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기본기간’은 임용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재직연월수이고 ‘특례기간’은 합산기간, 소급통산기간,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사병기간)을 의미한다. ‘퇴직급여 재직기간’은 기본기간과 특례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위 case의 경우 특례기간 ‘2년 3월’은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이다. ‘퇴직수당 재직기간’은 기본기간만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퇴직수당제도 도입(1991.10.1) 전에 임용된 경우는 기본기간과 특례기간을 합하여 계산하고, 휴직 등의 경우 감축기간이 있다. 위 case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이다.

■ 보수월액

일시금	1,959,637 (보수평균월액 기준)	퇴직수당	2,062,283 (최종보수월액 기준)
-----	--------------------------	------	--------------------------

일시금(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등)과 퇴직수당은 ‘최종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다. 다만, 일시금의 경우 승진 등으로 퇴직 전 1년 이내에 보수변동이 있는 때에는 증감 前·後의 보수를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2항), 위 case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구 분	기여금기호	보수월액	보수평균월액(①+②/2)
승진 後(①)	2A715Y	2,062,283	1,959,637
승진 前(②)	2A815Y	1,856,991	

■ 산정내역

예상퇴직급여	일시금①	52,219,420	퇴직수당②	13,224,380	소계③ (①+②)	65,443,800
	소득세④	312,500	주민세⑤	31,250	실지금액 (③-④-⑤)	65,100,050

일시금은 $[(\text{보수월액} \times \text{재직연수} \times 150/100) + (\text{보수월액} \times \text{재직연수} \times 5\text{년초과재직연수}/100)]$ 의 산식에 의해 계산되며, 퇴직수당은 $[\text{보수월액} \times \text{재직연수} \times \text{재직연수별 지급률}]$ 산식에 의해 계산되는데, 위 case의 경우 재직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지급률 ‘45%’가 적용된다.

소득세, 주민세의 경우 수재직기간 중 2002년 이후 재직기간만 과세기간에 해당된다. 이는 2001년까지는 재직 중에 납부하는 기여금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 후의 연금소득에도 과세하지 않았으나(入口과세), 중간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02년 이후에는 기여금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연금소득에 과세하였기 때문이다(出口과세).

■ 연금지급개시연령

정년	57세 기준	지급사유	20년 미달의 2배 (2000.12.31. 기준)	지급개시연월	2022년 01월 (54세) (개시연월 전월까지 재직한 경우)
----	--------	------	--------------------------------	--------	---------------------------------------

정년은 직종, 직급, 직무분야 등의 대표 정년을 표기한 것이며, 지급개시연령(연월)은 “지급개시연월의 전월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퇴직월 익월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시기를 예상한 것이다. 위 case의 경우 연금법 개정 당시(2000.12.31. 기준)의 총재직기간은 9년 6월로서 20년 미달연수는 10년 6월이며, 따라서 2000.12.31. 기준 미달연수의 2배(10년 6월×2=21년)가 되는 시점인 2021년 12월까지 재직할 경우, 퇴직 익월인 2022년 1월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하다(기준 재직자에 대한 연금지급개시연령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2000.12.30. 개정법 부칙 제10조 참조).

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도 ‘재직기간’ 산정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와 같다. 그러나 20년 이상의 경우 연금수급이 가능하고, 연금과 일시금은 적용보수와 급여산식이 다르므로 ‘급여산정내역’은 차이가 난다.

【case 2】1981년 7월 9급 3호봉 임용, 2007년 12월 현재, 5급 25호봉

■ 인적사항

성명	이×	주민등록번호	55××××- ×××××××	임용일	1981.××.××	기관명	××××구청
----	----	--------	-----------------	-----	------------	-----	--------

■ 재직기간

기본기간	특례기간	감축기간	퇴직급여 재직기간	퇴직수당 재직기간
26년 6월	3년 7월	0년 0월	30년 1월	30년 1월

위 case의 경우 특례기간 ‘3년 7월’ 중 ‘2년 10월’은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사병기간)이고 나머지 ‘9월’은 과거 공무원경력(‘75.7~76.3’) 합산기간이다. 퇴직수당 재직기간은 위 case의 경우가 “퇴직수당 제도 도입(1991.10.1) 전에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기간과 특례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공무원 연금제도 이해

■ 보수월액

일시금	3,126,208 (최종보수월액 기준)	연금	2,917,232 (평균보수월액 기준)	퇴직수당	3,126,208 (최종보수월액 기준)
-----	--------------------------	----	--------------------------	------	--------------------------

일시금과 퇴직수당은 ‘최종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연금의 경우는 ‘평균보수월액’(퇴직 전 3년 보수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각 연도의 보수월액을 단순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사유 발생 시점으로 재평가한 보수월액을 평균하므로 최종보수에 거의 근접하게 된다. 즉, ‘평균보수월액’이란 급여사유(퇴직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해당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이 때 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는 매 연도별 공무원 평균보수인상률을 적용하며, 동 인상률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1월 25일까지 고시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참조).

■ 산정내역

일시금선택시	일시금①	164,607,520	퇴직수당②	56,410,000	소계③ (①+②)	221,017,520
	소득세④	0	주민세⑤	0	실지금액 (③-④-⑤)	221,017,520
연금선택시	연금월액①	2,046,920 (연금보수월액의 70.1666%)	퇴직수당②	56,410,000	소계 (②)	56,410,000
	소득세③	0	주민세④	0	실지금액 (②-③-④)	56,410,000

일시금과 퇴직수당 계산식은 전술한 바와 같으나, 위 case의 경우 퇴직수당 지급률은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지급률 ‘60%’가 적용되는 점이 다르다. 연금은 $[(\text{보수월액} \times 50/100) + (\text{보수월액} \times 20\text{년초과재직연수} \times 2/100)]$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연금선택시 20년 초과기간의 일부를 공제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세, 주민세의 경우 숲재직기간 중 2002년 이후 재직기간만 과세기간에 해당하는데, 위 case의 경우 전체 재직기간 대비 2002년(소득세법 개정) 이후 재직기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기초공제 후 과세금액이 없게 된다.

■ 연금지급개시연령

정년	60세 기준	지급사유	20년 이상 근무 (2000.12.31. 기준)	지급개시연월	2008년 01월 (52세) (개시연월 전월까지 재직한 경우)
----	--------	------	-------------------------------	--------	---------------------------------------

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또는 정년 등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되나, 1995.12.31.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의 특례가 있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이전이라도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 1995.12.31.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지급특례(2000년 개정법 부칙 제10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2000.12.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의 경우

-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한 때부터 즉시 퇴직연금을 지급

◆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2000.12.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 다음의 '연령요건' 과 '기간요건' 둘 중에 유리한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

(1) 연령요건 : 퇴직한 연도를 기준으로 아래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

퇴직연도별 지급연령

퇴직연도	지급연령
2001년부터 2002년	50세
2003년부터 2004년	51세
2005년부터 2006년	52세
2007년부터 2008년	53세
2009년부터 2010년	54세
2011년부터 2012년	55세
2013년부터 2014년	56세
2015년부터 2016년	57세
2017년부터 2018년	58세
2019년부터 2020년	59세

(2) 기간요건 :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2000.12.31. 기준)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의 2배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

※ 예컨대, 2000. 12. 31. 현재 재직기간이 15년인 자의 경우 미달연수(5년)의 2배가 되는 시점인 재직기간 25년 이상이 되어 퇴직하면, 퇴직연령에 관계없이 즉시 퇴직연금 수급 가능함

위 case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2000.12.31. 기준) 재직기간 20년 이상으로 언제 퇴직하더라도 퇴직 익월부터 곧바로 퇴직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다. 기타사항

「예상퇴직금」조회 화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조회일 현재 시점의 예상퇴직금 내역이 제공되지만, 그 밖에 대략의 미래시점의 예상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는 부가 기능도 있다. 위 화면의 「예상퇴직금 재산정」버튼을 클릭하고, ‘예상퇴직일’ 과 ‘기여금기호’ (예상직급호봉) 그리고 ‘평균보수인상률’ 등의 가정조건을 입력하면 미래 시점의 예상퇴직급여를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있다. 아울러 조회 화면 하단에는 지급개시일 이전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의 ‘조기퇴직연금’ 지급비율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다. 

